관계부처합동

보 도 자 료

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11. 26.(금) 조간 *인터넷 2021. 11. 25.(목) 12:00 이후 / 총 4쪽		
관계부처	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	과 장 김정연 사무관 김 원 사무관 황규석	044-202-8870 044-202-8872 044-202-8871
	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	과 장 최선두 사무관 문유상	044-202-6810 044-202-6803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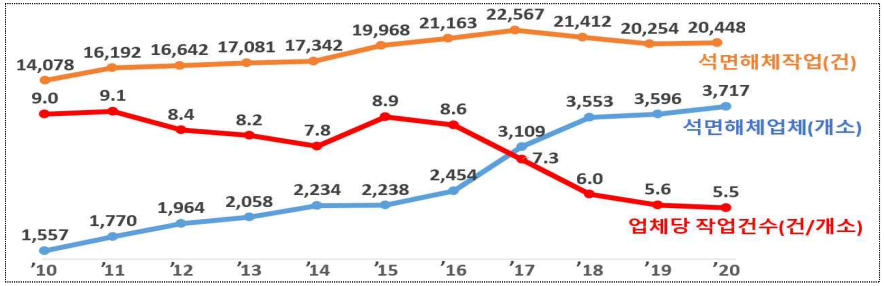
고용부·환경부 합동, 안전한 석면해체·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

□ **고용노동부**(장관 안경덕)와 **환경부**(장관 한정애)는 **석면해체·제거작업**(이하, '석면해체작업')이 **보다 안전**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**현황을 분석**하고 **업계 간담회**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

※ 석면은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(IARC)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~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야기

○ **석면해체·제거업체**(이하, '석면해체업체')의 **질 제고**,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**관리 강화**, **하도급 제한**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**제도개선 방안**을 마련했다.

< '10년~'20년 석면해체업체 및 석면해체작업 현황 >



○ 특히, 지난 6월 **광주 학동 붕괴 사고**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**재하도급** 과정 중에 **과도하게 금액이 축소**(22억원→4억원)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.

< 제도개선 주요내용 > ※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한 대책 본문 참고

<1> 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전문성 강화

○ 석면해체업체 **등록요건**으로 **석면 관련 지식**을 갖춘 **산업안전보건자격자** 등 **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**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(이하, '산안법령') 개정을 추진한다.

○ 또한, 안전보건공단(이하, '안전공단')에서 매년 실시하는 **안전성평가** 시 **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**을 받을 수 있도록

- 작업 건수, 작업 시 필요 장비(음압기 등)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**점수를 차등 부여**하는 방식으로 **평가항목을 개선**한다.

<2>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

○ **중간브로커**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, 석면해체업체 점검(고용부), 안전성평가(안전공단)에서 **제외되었던 업체 위주**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하여

- **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** 등 **영업행위**를 하여 위반한 업체는 **등록취소 처분**한다.

○ 아울러, **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** 등 **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**는 자동 **등록취소**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한다.

<3> 안전성평가(안전공단)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

○ 안전성평가 결과 **우수업체(S, A, B 등급)**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**건설업계, 교육청 등을 지도**하고

-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**D등급 업체**는 환경부·지자체의 '슬레이트 처리 지원' **사업 참여가 제한**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.

<참고> 석면해체업체 점검(고용부) 및 안전성평가(안전공단)

○ **(석면해체업체 점검) 지방노동관서**에서 석면해체업체의 산안법령상 등록기준 준수 여부,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**등록취소·업무정지 등 행정처분**

* 점검대상 선정 시 안전성평가 결과 하위등급 업체 우선 고려

○ **(안전성 평가) 안전보건공단**이 매년 1건 이상 작업이 있는 석면해체업체 대상으로 작업시 산안법령상 기준 준수 여부, 장비 보유 등을 점검하고 **5등급(S, A, B, C, D)으로 평가**

<4>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

○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**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**된 경우 계획서 **반려** 및 **보완 등을 요구**하며

- **지자체**는 석면안전관리법령(이하, '석면법령')에 따라 **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** 시, 도급 과정 중의 **공사금액을 포함**하여 **공개**함으로써 도급계약의 **투명성을 높인다**.

○ **하도급**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**반드시 현장점검·감독**을 실시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

- 중장기적으로 **산안법을 개정**하여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.

<5> 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및 관리의 질 제고

○ **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**로 안전공단, 고용부, 석면해체감리인(이하, '감리인')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**상호 중복을 최소화**하면서 **효율적**으로 관리되도록 하고

- **불량 사업장**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·감독으로 **연계**한다.

○ **환경부**는 감리인에 의한 **현장 관리의 질을 높이기** 위해 **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**한다.

- 시·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·장비 보유현황, 업무수행체계 및 성과 등을 **2년마다 평가**하며, 감리인의 **평가 등급**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**공개**할 계획이다.

<6> 고용부-환경부 연계 강화

○ 석면해체업체·감리인의 **산안법**(고용부)·**석면법령**(환경부) **위반사항**에 대해 **점검·감독 결과**를 **지방노동관서·지자체가 서로 공유**하여

- 지자체는 석면해체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**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** 등을 **조사·처분**하고

-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업체·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**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·처분**한다.

○ 아울러, 석면해체작업 전·후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의무를 각각 산안법령(고용부) 및 석면법령(환경부)에서 **단편적으로 나열**하고 있어 실제 법령 간 연계 작동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

- **산안법령 정비**로 석면해체작업 전·후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더욱 명확히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.

< 산안법령 정비 주요 내용(안) >

	현행	개선
작업前	·**(산안법 시행규칙)** 석면해체업자는 작업 전에 **작업계획서를**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·**(석면법)** 감리인의 업무에 **작업계획서의 적절성 검토**가 포함	·**(산안법 시행규칙)** 석면해체업자는 작업 전에 **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감리인의 적절성 검토를 받은 작업계획서**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
작업後	·**(산안법 시행규칙)** 석면해체업자는 작업 후 **석면농도기준(0.01개/cm³) 준수 여부 측정** 후 지방노동관서 제출 ·**(석면법)** 감리인의 업무에 **산안법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관리**가 포함	·**(산안법 시행규칙)**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작업 후 **석면농도기준(0.01개/cm³) 준수 여부 측정하고**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**감리인에게 준수 여부 관리 확인을 받은** 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

□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**최대한 조속히 안착**되도록 **세부 지침 마련·시달, 관련 규정 개정**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**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**은 "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**안전을 최우선**으로 고려하여 **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**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."라고 밝혔다.

□ **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국장**은 "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**유기적인 연계**를 통해 **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**를 운영해 나가겠다."라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김원 사무관(☎044-202-8872),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문유상 사무관(☎044-202-6803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